일자리 기여 __개

| 등록번호 | 주택정책과-21948 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|--|--|--|--|
| 등록일자 | 2022. 12. 29. | | | | |
| 결재일자 | 2022. 12. 29. | | | | |
| 공개구분 | 부분공개(5) | | | | |

| 주무관 | 주거복지팀장 | 주택정책과장 | 도시정책관 | 도시주택실장 | |
|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|
| | | | | 전결 2022. 12. 29. | |
| 김선영 | 김태철 | 정종국 | 황학용 | 홍지선 | |
| 협조 | | | | | |

フフニ 경기도

- 道 주거복지 정책 추진 관련 -2023년 주택개조사업 추진계획 보고



도시주택실 (주택정책과)

- 道 주거복지 정책 추진 관련 -2023년 주택개조사업 추진계획 보고

- ◆ 주거취약계층·장애인 등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도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2023년도 道 주택개조사업(5건)* 추진계획 보고임.
 - * 햇살하우징, G-하우징, 중증장애인, 장애인^(구 농어촌), 고령자 주택개조사업

□ 사업개요

- 추진근거
 - 「주거기본법」제16조, 「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」제3조 및 제22조, 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5조
- 사업기간 : 2023년 1월 ~ 12월
- **사 업 량** : 938호(햇살하우징 등 5건) ······ 사업별 세부계획 참고
- **사 업 비** : 37.9억원(예산사업 4건/798호, 非예산 1건/140호)
- **추진방식** : 공공기관(GH) 위탁, 민간 및 시·군 직접

| | 2023년 추진 주택개조사업 | | 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사 업 명 | 햇살하우징 | G-하우징 |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| 장애인 ^(구 농어촌) 주택개조사업 | 어르신 안전 하우징 | | |
| 대 상 | 중위소득 50% 이하 | 중위소득 70% 이하 및 복지시설 | 중위소득 70% 이하, 심한 장애인 |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 장애인 | 만65세이상 기초연 금수급 자 | | |
| 사업량(호) ※()전년도 목표/실적 (500/500) | | 140 (140/173) | 120 (180/180) | 182 (36/34) | 200 | | |
| 사업비 1,480 (백만원) (도비100%) ※()전년도예산 (2,500) | | 비예산 | 600 (도비100%) (900) | 691.6 (국비50%, 시·군비 50%) (136.8) | 1,020 (도비100%) | | |
| 추진방식 | 공공(GH) 위탁 | 공공(GH) 위탁 민간 직접 | | 공공(GH) 위탁 시·군 직접 | | | |
| 난방비·전기료 절감 등 에너지 사업내용 효율화 사업 및 냉난방기 교체 또는 설치 | | 참여업체 자원 및 재능 기부 등을 통한 집수리 | 장애 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|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맞춤형 개선 |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후 연내 추진 예정 | | |

□ 2023년 추진방식 변경(안)

| 구분 | 기존 | 변경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지원 대상 세분화 | 저소득 취약계층 및 장애인 | 고령자 맞춤형 사업 신설 ("어르신 안전 하우징) | | |
| 지원요건 완화 | 5년 이내 수혜자 중복 제외 | 3년 이내 수혜자 중복 제외 ※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한 계약기간(2년),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이사 및 임차인 동의 부담 등의 사유로 신청 불가함을 고려하여 지원요건 완화 | | |
| 공사항목 추가 | 「햇살하우징」사업 에어컨 설치 지원 | 에어컨 설치 항목 추가 (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) | | |
| 지역 확대 시행 동어촌 지역 등록 장애인 대상 | | 경기도 내 전 지역 등록 장애인 대싱 | | |
| 홍보 강화 | 홍보 미비 | 경기도 공식 블로그·언론보도 및 주거복지포털 통해 적극 홍보 추진 | | |

□ 향후 추진계획

- '22. 12월 :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(道 → GH, 시·군)
- '23. 1월 ~ 3월 : 사업별 대상자 접수 및 확정(시.군 등 → 道)
- '23. 4월 ~ 6월 : 시공사 선정 및 실태조사 ※ G-하우징 및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사전 준비 완료 시 우선 착공
- '23. 6월 ~ 11월 : 공사 추진
- '23. 12월 ~ '24. 1월 : 결과 보고 및 사업 정산 ※ 참고자료 별첨(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각 1부)

□ 행정 사항

- (시·군) 2023년 사업 대상자 신청 시 수선유지급여 대상 확인
- (시·군) 2023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확대에 따른 신규 추진 16개 시(市) 사전 절차 이행 철저
- (GH) 2022년 수혜자 하자보수기간 등 하자 관리 사항 안내

붙임 1. 소득기준 1부.

- 2. 연도별 추진 실적 1부.
- 3. 시·군별 사업 배정량 1부.
- 4. 지역별 지원현황 각 1부.
- 5. 추진 절차 1부.
- 6. 관련 법령 1부.
- 7. 주택개조사업 지원서식 각 1부. 끝.

참고 사업별 세부 계획

햇살하우징 □ 법적근거:「주거기본법」제16조 및「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」제3조 □ 사업기간 : 2023. 1월 ~ 12월 □ **사업대상** : 도 내 31개 시·군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 ※ 기타 시장·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(임차인 포함(임대인 동의 必)) □ 사업제외대상 ○ 수선유지급여 수급자, 비주택(구조안전 상 수리 불가 포함), 햇살하우징, 장애인·중증장애인 주택개조. G-하우징(500만원 이상) 3년 이내 수혜자 □ **선정절차** : 시·군별 배정량 및 소득 수준 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 ※ 대상자 중도 포기 등으로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량의 50%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하고 당해 사업 수혜 불가 시 차기년도 이월 후 우선 지원 □ 사 업 량 : 296호 □ **사 업 비** : 1,480백만원(도비 100%) □ **사업내용** : 난방비·전기료 절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및 냉·난방기 설치·교체 등 ○ (난방비) 기밀성 창호 및 문으로 교체, 벽체 내단열 보강, 보일러 교체 ○ (전기료)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 ○ (냉·난방기 설치·교체)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또는 교체 ※ 기타 도배, 장판, 싱크대, 화장실, 백색도기류, 신발장 등 주택 내 시설 등 ※ 지붕·바닥의 방수 및 누수 공사 제외

□ 추진일정

- 사업 추진계획 수립 : 2022. 12월(道)
- 사업 대상자 접수 및 확정 : 2023. 1월 ~ 3월(시·군 등 → 道)
- 시공사 선정, 에너지 효율진단 및 실태조사 : 2023. 4월 ~ 6월(GH)
- 공사 시행 : 2023. 6월 ~ 12월(GH)
- 참여업체 등 유공자에 대한 도지사 표창 : 2023. 12월(道)
- 사업 결과 보고 : 2024. 1월(GH → 道)

Ⅱ G-하우징

- □ 사업기간 : 2023. 1월 ~ 12월
- □ 사업대상 : 중위소득 70% 이하 가구 또는 복지시설 등

※ 기타 시장·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(임차인 포함(임대인 동의 必))

□ 사업제외대상

- 햇살하우징, 장애인·중증장애인 주택개조, G-하우징(500만원 이상) 3년 이내 수혜자
- □ 사 업 량 : 약 140호
- □ 사 업 비 : 비예산 사업
- □ **참여단체** : GH, 대한주택건설협회 및 민간단체, 건설회사 등
- □ **사업내용** : 참여업체 자원 및 재능 기부 등 봉사를 통한 집수리
 - 유형① : 참여 업체가 개보수 용역 발주
 - 유형② : 재능·자원을 직접 활용하여 공사 시행
 - 유형③ : 복지기관에 기부 후, 복지기관에서 공사 시행

□ 추진일정

- 사업 추진계획 수립 : 2022. 12월(道)
- 참여업체 파악 : 2023. 1월 ~ (道, 시·군 등)
- 지원대상 파악 : 2023. 1월(시·군 등)
- 지원대상 현지조사 : 2023. 3월(道, 시·군, 참여업체)
- 공사 시행 : 2023. 4월 ~ (참여업체)

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Ш □ **법적근거** : 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5조 및 「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」제3조, 제22조 □ 사업기간 : 2023. 1월 ~ 12월 □ 사업대상 :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중위소득 70% 이하인 가구 ※ 임차인 포함(임대인 동의 必) ※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수혜자 퇴거 시 별도 원상복구 계획 없음 사전 고지 후 관리사무소·LH 동의 必, 토지소유주와 주택소유주가 다르면 소유주 모두의 동의 必 □ **선정기준** : 시·군별 배정량, 장애의 정도 및 소득 수준 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 ※ 대상자 중도 포기 등으로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량의 50%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하고 당해 사업 수혜 불가 시 차기년도 이월 후 우선 지원 □ 사업제외대상 ○ 수선유지급여 수급자, 비주택(구조안전 상 수리불가 포함), 햇살하우징, 장애인·중증장애인 주택개조, G-하우징(500만원 이상) 3년 이내 수혜자 □ 사 업 량 : 120호 □ **사 업 비** : 600백만원(도비(주거복지기금) 100%) □ 사업내용 : 장애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○ (지원항목) 출입문, 바닥, 비상연락장치, 욕실, 싱크대 등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주거환경개선 항목(도배, 장판, 간단수리, 청소, 단열 등)

- (예외허용) 옥외 화장실, 출입구(경사로, 손잡이 등) 등에 한한 주택 외부시설 ※ 지붕·바닥의 방수 및 누수 공사 제외
- □ 추진일정
 - 사업 추진계획 수립 : 2022. 12월(道)
 - 사업 대상자 접수 및 확정 : 2023. 1월 ~ 3월(시·균 등 → 道)
 - 시공사 선정 및 실태조사 : 2023. 4월 ~ 6월(GH)
 - 공사시행 : 2023. 6월 ~ 12월(GH)
 - 사업결과보고 : 2024. 1월(GH → 道)

장애인^(구 농어촌) 주택개조사업

□ 법적근거 : 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5조

□ 사업기간 : 2023. 1월 ~ 12월

□ 사업대상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장애인

□ 사업제외대상

IV

○ 수선유지급여 수급자,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 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 지원을 받은 자 및 유사한 주거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

※ 다만,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

□ 사 업 량 : 182호

< 시·군별 배정 물량 >

(단위 : 호)

| 시·군 | 물량 | 시·군 | 물량 | 시·군 | 물량 | 시·군 | 물량 | 시·군 | 물량 |
|-----|----|------|----|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|
| 수원시 | 15 | 용인시 | 8 | 고양시 | 13 | 성남시 | 5 | 화성시 | 12 |
| 부천시 | 0 | 남양주시 | 5 | 안산시 | 13 | 평택시 | 10 | 안양시 | 5 |
| 시흥시 | 5 | 김포시 | 3 | 파주시 | 3 | 의정부시 | 9 | 광주시 | 7 |
| 광명시 | 5 | 하남시 | 5 | 군포시 | 5 | 오산시 | 7 | 양주시 | 3 |
| 이천시 | 5 | 구리시 | 10 | 안성시 | 4 | 의왕시 | 0 | 포천시 | 4 |
| 양평군 | 3 | 여주시 | 4 | 동두천시 | 10 | 과천시 | 0 | 가평군 | 2 |
| 연천군 | 2 | | | • | % 시·군 | 수요조사 및 | 국토교- | 통부 확정내 | 시 반영 |

□ 사 업 비 : 691.6백만원(국비 50% : 시·군비 50%)

□ 사업내용 :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 편의를 위해 맞춤형 개선, 지원 대상 주택 내부시설 외에 일부 외부시설 포함

※ 주택 내의 편의시설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, 대지 내의 주택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출입로·경사로 보수·설치, 외부 화장실 개보수 및 주택 내부 신규 설치 등 포함

※ '22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업무처리지침 참고

□ 추진일정

○ 업무처리지침 통보 : 2023. 3월(국토교통부 → 道 → 시·군)

○ 시·군 계획수립 및 대상가구 선정 : 2023. 4월 ~ 5월

○ 시·군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시행 : 2023. 6월 ~ 11월

○ 사업 결과 보고 : 2023. 12월 ~ (시·군 → 道)

○ 정산·결산서 제출 : 2024. 1월(시·군 → 道 → 국토교통부)